

##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 2 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 대학 각 직위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, 비전임교원에게는 이를 준용한다.</p> <p>② <b>방문교원, 대우교원, 연구교원, 기금교원, 겸직교수, 겸임교수</b>,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전임교원 인사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조교에 관한 사항은 조교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/p>	<p>제 2 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b>방문교수, 대우교수, 연구교수, 기금교수, 겸직교수, 겸임교수</b>,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전임교원 인사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명칭 일원화 (교원→교수)</p>
<p>제 4 조(겸직금지) ① 교원은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.</p> <p>② 교원이 다른 학교에 <b>출강 또는 수강을</b> 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 받고자 할 때에는 <b>소속부서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b></p> <p>&lt;신설&gt; &lt;신설&gt;</p> <p>③ 교원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창업 관련업무에 대하여 1년간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. 또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 4 조(겸직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교원이 다른 학교에 <b>출강</b> 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 받고자 할 때에는 <b>교육·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b></p> <p>③ <b>총장은 제 2 항에 따른 겸직 승인 시, 겸직의 필요성, 기간의 적절성, 대상 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④ <b>교육공무원법 제 1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업체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받은 보수 일체를 다음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</b></p> <p><b>1.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</b> <b>2.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</b></p> <p>⑤ 교원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창업 관련업무에 대하여 1년간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. 또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7 조의 5</p>